

해외여행 중 여행사의 과실로 다쳤다면?

무더운 여름입니다. 휴가철이라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카드뉴스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건개요

A씨는 B회사의 안내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후 발작과 이상 증세를 보이게 시작했습니다.

A씨는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요청을 했지만, B회사의 가이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국내의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C와 항공이송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국내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치료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 측은 현지 의료보험 제도의 적용이 거부되거나 가입된 여행자 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치

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원심판결

쟁점 1

원심은 “B회사가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경미했고 다른 여행객들은 이상이 없었으므로 A씨의 기질적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아 B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쟁점 2

원심은 “A씨가 지급한 여행비용을 B회사가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체류비용, 국내 환자후송 및 국제전화 통신비에 대한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여행계약상의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가 아니하거나,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이 채류비용, 국내환자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A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 귀환운송비, 채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은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채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